

태양광 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

서울에너지공사

1. 규제특례 내용

-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, 직접 또는 ESS에 저장후 전기차에 충전하는 솔라스테이션 실증 * ESS내 충전용 전력이 부족할 경우 한전에서 전력을 충당하여 전기차에 공급
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- 구역 : 서울
- 기간 :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(2021.12.1. ~ 2023.11.30.)
- 규모 : 서울시 내 솔라스테이션 2곳(양재, 양천)
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1. (전기 충전)
 -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,
 - ②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 체결 시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며 ‘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’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적용받고,
 - ③ 전기차 충전 외 다른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아야 함
2. (ESS) 전기저장장치는 옥외 전용건물에 설치(옥내 사용금지)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, 다음사항을 준수
 - ① (설치기준 준용) ‘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’,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, ‘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·절차 등에 의한 고시’ 등의 안전기준 준수
 - ② (안전조치 이행기준 준용) 충전율 제한조치 이행 등(별첨)
 - ③ (ESS 운영정보 등)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점검에 협조 및 ESS 안전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(BMS, PMS, EMS 등의 계측정보, 온·습도 등으로 전기안전공사가 정하는 사항)
3. 향후 실증기간 동안 축적된 운영정보는 추가 안전대책 마련 및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해 산업부 및 전기안전공사에 제공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-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
 -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(대인 1.8억/명, 대물 10억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)
- 상기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할 경우, 서울에너지공사에서 초과액을 배상
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- 특별한 지정사항 없음